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심사함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1. “세액심사”란 ----- ----- ----- ----- --.	• 오탈자 수정
가.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가. ----- -----	
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이하 “사후세액심사”라 한다)	나. ----- -----	
2. “관세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방문 또는 이를 대신하여 <u>서면으로</u>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 ----- ----- <u>서면(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으로</u> ----- ---.	• 서면 조사의 범위에 비대면 온라인조사 방식을 포함

3. “자율심사”란 업체가 내부업무처리체계의 적정성, 납부세액 및 환급액의 정확성, 통관의 적법성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3. -----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및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

3의2. “자율심사 관리책임자”란 자율심사업체 (신청업체를 포함한다)가 스스로 제60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정 한 임직원을 말한다.

제5절 납세신고도움정보

제53조의2(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① 수입자는 납세신고도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납세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도움정보 활용 기업이 납세 신고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신고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 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허용

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2

• 자율심사의 정의 보완

• 자율심사 관리책임자 정의 신설

• 절 신설

• 현행 제61조를 제53조의2로 이동

3. 「납세자의 날」 표창 대상자 추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관세조사 결과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작 제>

제5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서류·전산처리장치·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납세의 무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세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세조사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57조(관세조사 결과통지) ①·② (생략)

제58조(자율심사) ① 세관장은 법 제255조의2제1

- 관세법 개정(§114 ①·③)내용을 반영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기존 15일 → 20일) 및 통지서 명칭 명확화

- 제60조의2로 조문을

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출입업체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8조 제3항에서 정한 자율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장의2 자율심사

제60조의2(자율심사)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납세 신고세액 및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하여 자율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60조의3에 따라 승인받은 자율심사업체에게 별표 3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60조의3(자율심사업체 승인)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사업체로 승인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자율심사업체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법」 제2조제2호의 직무를 수행할 관세사(이하 “확인관세사”라 한다) 선

재구성해 이동

- 장 신설
- 자율심사업체 신청 절차 신설

- 자율심사업체 혜택 규정 신설
- 자율심사업체 신청·승인 절차 신설

<신 설>

임 사항을 별지 제18호의5서식으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심사업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심사업체 해당 여부를 검토 후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자율심사업체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0조의4(자율심사 결과 제출) ① 자율심사업체는 승인 후 2년마다(최초 승인 연도에는 직전 관세조사 대상기간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확인관세사가 검증·확인한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자율심사 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조문 반영 및 자율심사 항목 구체화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과가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품목분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6.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요건의 구비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7. 관세 등의 납부가 보류된 물품 관리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자율심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보고서를 자율심사 대상 기간 종료일로

• 자율심사결과보고
기한 및 연장기한

<신 설>

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의 자율점검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자율심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자율심사업체는 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자율심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60조의5(자율심사 결과의 확인) ① 자율심사업체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자율심사결과는 2인 이상의 확인관세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검증·확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자율심사업체에 소속된 관세사

2. 자율심사업체를 위해 「관세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신고

마련

• 세관장의 위험정보 제공 절차 마련

• 제공받은 위험정보에 대한 검증결과 자율심사결과에 반영 방식 마련

• 자율심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관세사의 확인·검증 방법 마련

<신 설>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하는 신고인 관세사
및 해당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한 사무소 또
는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

3. 그 밖에 자율심사결과 확인업무 수행이 부
적절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관세사를 선임한 자율
심사업체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자율심사
결과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선임관세사를 변경하려는 경
우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자율심사결과 확인
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사의 확인결
과 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제60조의6(자율심사결과 통보 등) ①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제출한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별지 제18호의7서식으로 자율심사업체
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심사업체에게
통지하기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세조

- 관세사 선임(변경)
신고 절차 마련

- 관세사 확인결과 평가
절차 마련

- 자율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지 절차 마련

- 처분검토회의 상정
절차 신설

<신 설>

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조치가 완료된 자율심사 건에 대해서는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를 통지한 경우

제60조의7(자율심사업체 승인 취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업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 조치완료된 자율심사 건 관세조사 면제 규정 신설

- 자율심사업체 승인 취소 근거 열거

※ 시행령 제32조의2 제6항의 내용

<신 설>

경우

3.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0조의8(자율심사업체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자율심사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0조의3 및 제60조의7에 관한 사항

2. 기타 관세청장이 자율심사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② 제60조의7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업체에게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자율심사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자율심사업체 승인, 취소 및 자율심사결과 평가 등에 대한 심의 절차 마련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율심사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으로 한다.

1.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세원심사과장·기업심사과장·공정무역심사과장

2. 서울세관 심사1국장·심사2국장, 인천·부산세관 심사국장

3. 대구·광주세관 심사과장, 대구세관 납세지원과장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9조(환급신청서류자율심사) 수입 상태 그대

제89조(환급신청서류자율심사) -----

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가. 제87조제2호가목 및 나목: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제87조제2호다목: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제87조제2호라목: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3.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가. -----3-----

나. -----3-----

다. -----3-----

3. (현행과 같음)

부칙

<관세청 고시 제2026-00호, 2026. 00. 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오탈자 수정

• 오탈자 수정

• 오탈자 수정

<신 설>

[별표 3] 자율심사업체 혜택(제60조의2제2항 관련)

연번	혜택기준 및 내용	혜택
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금액의 감경	15%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

• 자율심사업체 혜택
마련

[별지 제11호서식] 관세조사통지서(제54조 관련)

관세조사 통지서	
관세조사 대상 업체	① 업 체 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자생년월일
	⑤ 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 관세조사 사유	※ 정기조사의 경우 '20xx년 x분기 정기 관세조사'로 기재
⑦ 관세조사 범위(분야)	
⑧ 관세조사 대상기간	
⑨ 관세조사 방법	방문조사 또는 간이조사 또는 서면조사
⑩ 관세조사 기간	0000. 0. 0. ~ 0000. 0. 0(총 00일)
⑪ 방문조사 기간	0000. 0. 0. ~ 0000. 0. 0(총 00일)
1. 「관세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관세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위 관세조사 기간 이전에 본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귀사가 위 통지내용의 조사범위(분야)에 대하여 조사개시일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소명자료제출 등을 함으로써 조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관장(인) 귀중 통지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세관 ○○관실 담당자 ○○○(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거나 권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관세조사 사전 통지서(제54조 관련)

관세조사 사전 통지서	
관세조사 대상 업체	① 업 체 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자생년월일
	⑤ 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 관세조사 사유	※ 정기조사의 경우 '20xx년 x분기 정기 관세조사'로 기재
⑦ 관세조사 범위(분야)	
⑧ 관세조사 대상기간	
⑨ 관세조사 기간	0000. 0. 0. ~ 0000. 0. 0(총 00일)
⑩ 방문조사 기간	0000. 0. 0. ~ 0000. 0. 0(총 00일)
1. 「관세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관세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위 관세조사 기간 이전에 본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귀사가 위 통지내용의 조사범위(분야)에 대하여 조사개시일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소명자료제출 등을 함으로써 조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관장(인) 귀중 통지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세관 ○○관실 담당자 ○○○(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거나 권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관세법 개정내용 반영에 따른 서식명 변경

<신 설>

[별지 제11호의2서식] 관세조사 통지서(제54조 관련)

- 관세법 개정내용 반영에 따른 서식 추가

관세조사 통지서		
관세 조사 대상 업체	① 업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자생년월일	
	⑤ 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 관세조사 사유		※ 정기조사의 경우 '20xx년 x분기 정기 관세조사'로 기재
⑦ 관세조사 범위(분야)		
⑧ 관세조사 대상기간		
⑨ 관세조사 기간		0000. 0. 0. ~ 0000. 0. 0(총 00일)
⑩ 방문조사 기간		0000. 0. 0. ~ 0000. 0. 0(총 00일)
⑪ 사전 통지 미실시 사유		※ 사전 통지 미실시 사유 기재("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조사 사전 통지 생략" 등)
1. 「관세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사가 천재 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관세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위 관세조사 기간 이전에 본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귀사가 위 통지내용의 조사범위(분야)에 대하여 조사개시일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소명자료제출 등을 함으로써 조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관세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귀 중		
통지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세관 ○○관실 담당자 ○○○(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거나 권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신 설>

[별지 제18호의2서식] 자율심사업체 신청서(제60조의3제1항 관련)

○ 자율심사업체 신청
서식 마련

자율심사업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	------	--	------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율심사 대상기간			

① 적용 요건	② 승격 여부
최근 2년 내 평균 수입액이 한계수준이 증가한 금액에 해당하든지 여부	[]에 []아니오
「한계법」·「외국환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세관의 조사 진행여부	[]에 []아니오
- 자율심사 결과보고 확인관계사 선임여부 - 관계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 첨부 가능 (선택)	[]에 []아니오

「납세법」 제71조에 따른 고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심사업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18호의3서식] 자율심사업체 승인 통보서(제60조의3제4항 관련)

**UNI-PASS**수신
(경유)
제 목

귀사를 「경제법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승인부호		승인일자	
발행처 (대표자)		사원자 총수	
비고			
정통부호		정통부호	
승인기관			

○○세관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발령자	직위(직급) 서명	직위(직급) 서명
편조자				
시일			연수	
주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밀계(가)

<신 설>

[별지 제18호의4호서식] 자율심사 결과보고서(제60조의4제1항 관련)

○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서식
마련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자율심사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입신고번호 (건 수)			
검증분야	자율심사 결과보고(요약)	추가 납부세액	
상 세 보고사항	1. 업체 개요 - 회사소개, 사업내용, 지배구조, 경영현황, 조직 및 업무, 업무 프로세스, 내부시스템 설명, 통관현황 등 2. 분야별 점검사항(확인관세사 검증결과 포함) - 과세가격(특수관계 거래포함), 감면, 품목분류, 환급, 내국세, 관세 등의 납부가 보류된 물품 관리, 외환 3. 세관장 제공정보 검증결과 4. 진행 중인 경쟁사안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율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OO세관장 귀하			

<신 설>

[별지 제18호의5서식] 자율심사결과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
(제60조의5제2항 관련)

○ 자율심사결과 확인
관세사 선임신고서
서식 마련

자율심사결과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

자율심사 업 체	상 호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관세사 선임 내역				
번 호	사무소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업무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1				
2				
3				
4				
5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자율심사결과 확인을 위한 관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관세사 등록증 등 인증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세관장 귀하

<신 설>

[별지 제18호의6서식] 자율심사결과 확인관세사 선임 변경 신고서(제60조의5제2항 관련)

자율심사결과 확인관세사 선임 변경신고서

자율심사 결과 확인 관세사	상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변경내역			
번호	구분	변경전	변경후
1	사무소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감리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2	사무소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감리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자율심사결과 확인을 위한 관세사 선임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지 제18호의6] 관세사 등록명령서 일괄서식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〇〇세관장 귀하

○ 자율심사결과 확인 관세사 선임 변경 신고서 서식 마련

- 20 -

<신 설>

[별지 제18호의7서식] 자율심사 결과 통보서(제60조의6 제1항 관련)

○ 자율심사 결과 통보서
서식 마련

자율심사 결과 통보서

① 자율 심사 업체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자율심사기간 (대상기간)					
③ 승인신고번호 (건수)					
④ 보정·수정내역(총세액 : 원) 경정청구 내역(총세액 : 원)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계
보정 내역					
수정 내역					
경정청구 내역					
⑤ 검토결과		(별지 내역)			
⑥ 재외내역		(별지 내역)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의6제1항에 따라...권사가 제출한 자율심사내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상기 자율심사 결과에 따라 보정·수정 등 조치가 완료된 자율심사 건은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관 세 조사 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⑥ 재외내역과 같이 세관장이 추가검토, 협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경우 등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의6 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